

##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7 호
----------	---------

제출년월일 : 2000. 2.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정이유

- 지방세법시행령의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30~50퍼센트→3퍼센트)이 개정되고
- 지방재정법(법률제6113호, 2000. 1.12)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16694호, 2000. 1.12)의 개정으로 도세의 27퍼센트(인구 50만이상 시 47퍼센트) 해당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시·군에 배분토록 규정하고
- 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 재원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도세의 27퍼센트(인구50만이상 시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재정보전금 총액중 일반재정보전금은 90퍼센트, 시책추진보전금은 10퍼센트 해당액을 재원으로 함.
- 일반재정보전금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60퍼센트, 징수실적에 따라 40퍼센트를 각각 배분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등 시책추진을 지원
-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재정보전금은 자치행정국장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 따로붙임

##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규정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정보전금"이라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도가 당해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재정보전금"이라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시책추진보전금"이라함은 제6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보전금의 종류)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재정보전금
2. 시책추진보전금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전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도지사는 제2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은 매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재정보전금은 자치행정국장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한다.

제8조(재정보전금의 시정등) ①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등으로 당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전금의 배분계획을 통지 받고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재정보전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24조의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④ 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징수교부율)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